

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8.8.21

케이티 노동조합
위원장 김 해 관



[인사규정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]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56조(징계의결요구) ① 징계요구권자는 각 부서의 장과 윤리경영 부서의장으로 한다.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 윤리경영 부서의 장은 회사 직원에게 징계 협의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요구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	<p>제56조(징계의결요구) ① 징계요구권자는 각 부서의 장과 윤리경영 부서의 장으로 <u>하고,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의 경우 기관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 및 중앙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(이하 “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의 장을 포함한다.</u></p> <p>② <생략></p> <p>③ 윤리경영 부서의 장 <u>또는 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의 장은 회사 직원에게 징계 협의(성희롱고충 심의위원회의 장의 징계의결 요구는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의 경우에 한함)</u>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요구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.</p> <p>④ <생략></p>	<p>[개정내용] 징계의결 요구권자에 ‘성희롱 고충전문심의위원회의 장’을 추가함</p>
<p>제65조(징계의 집행) ① <생략></p> <p>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“별지 제9호”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</p>	<p>제65조(징계의 집행) ① <생략></p> <p>② 징계처분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“별지 제9호”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</p>	<p>[개정내용]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성희롱</p>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u>(추가)</u></p> <p>③ <생략></p>	<p>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의 경우, 피해자에게도 교부하여야 하며 성희롱과 무관한 징계사유가 포함된 경우 별도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<생략></p>	<p>피해자에게도 통지 하게 함</p>
<p>제68조(재심청구) ① 징계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징계요구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<생략></p>	<p>제68조(재심청구) ① 징계요구권자가 위원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의 경우 피해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징계요구권자는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, 징계처분을 받은 자,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는</u> 징계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~ ④ <생략></p>	<p>[개정내용] 재심청구권자에 성희롱 피해자를 추가함</p>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70조(재심청구절차) ① ~ ② <생략> <u>③ (추가)</u></p>	<p>제70조(재심청구절차) ① ~ ② <생략> <u>③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어 재심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재심청구서(별지 제12호 서식)</u> 2. <u>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 자료</u> 	<p>[개정내용] 성희롱 피해자의 재심청구절차를 신설함</p>
<p>제72조(재심청구의 취하)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 다만, <u>징계요구권자가</u>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제72조(재심청구의 취하) 징계요구권자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,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는</u> 재심의결일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. 다만, <u>징계요구권자,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가</u> 재심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[개정내용] 재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 자에 <u>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를</u> 추가함</p>
<p>제74조(처분의 효력) ①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. 다만, <u>징계요구권자가</u> 재심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u>② ~ ③ <생략></u></p>	<p>제74조(처분의 효력) ① 징계처분을 받은자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보다 무겁게 할 수 없다. 다만, <u>징계요구권자 또는 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가</u> 재심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u>② ~ ③ <생략></u></p>	<p>[개정내용] 성희롱 관련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한 경우, 재심의에서 원처분보다 무거운 처</p>

현 행	개 정	비 고
		분이 정해질 수 있도록 규정함.
	(별지 제12호 서식) 징계재심 청구서(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용)	성희롱 피해자용 징계재심청구서 를 마련함.

※ 부칙 (2018. XX. XX) (발령일로 반영)

이 세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징계재심 청구서(성희롱 예방지침 위반 관련 피해자용)

징계 재심 청구자	성명	직책/직위	소속
		생년월일	재직기간
재심의 취지			
재심의 이유 및 입증방법			

위와 같이 징계재심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[청구인 또는 청구기관]

(인)

※ 재심의 취지, 재심의 이유 및 입증방법은 별지 작성할 수 있음

대리인 지정서

소속
직책/직위
성명

위 자를 ○○○의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위임자 (인)

○○ 인사위원회 귀하